

# WCPFC 제20차 기술이행위원회 참석 결과

## I.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9.24(화)~10.1(화) 06:30~15:00(한국시간)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FFA, 미국, 캐나다, EU, 한국, 일본, 중국 NGO 등 약 150명
- (주요의제) 회원국 이행평가, 보존관리조치 개정, 기후변화 등

## II. 주요내용

### □ IUU 선박목록

- 호주는 협약수역 내 IUU 활동 혐의로 *LU RONG YUAN YU 139*호(중국)를 IUU 선박목록에 등재할 것을 회기간 제안하였음. 중국은 동 선박에 제재를 부과하였음을 보고하였고 TCC20은 동 선박을 목록에 등재하지 않기로 함
- TCC20은 기존 IUU 선박목록에 있는 선박 4척\*을 2025년까지 목록에 계속 유지하기로 함

\* *NEPTUNE*(무국적), *FU LIEN No.1*(무국적), *YI FONG 168*(무국적), *KUDA LAUT 03*(필리핀)

### □ 협력적 비회원 지위

- TCC20은 8개의 협력적 비회원 지위 신청\*을 검토하였음
  - \* 바하마, 퀴라소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라이베리아, 파나마, 태국, 베트남
- TCC20은 협력적 비회원으로서의 의무\*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1차 총회가 8개 신청국들에 대한 협력적 지위 부여를 고려할 것을

권고하였음

\* 보존관리조치 준수, 이행 정보 및 데이터 제출, TCC 회의 참석, 기한 내 분담금 납부

## □ 이행감시제도

- TCC20은 일부 CCM들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이행감시보고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음
- TCC20은 연승과 선망의 오피서버 승선을 차이를 다루기 위한 샘플링 메커니즘 방법론 개선 작업을 사무국이 과학서비스제공자(SSP)와 계속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- TCC20은 20차 총회의 요청으로, 사무국이 이행사건 파일시스템(CCFS) 내 조사 미완료 사건들을 종결시키는 사유들\*을 추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, CCM들이 미완료 사건들을 종결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
- \* 선원/선장 변경, 선박 또는 선주/운항자 부존재, 공소시효 만료, 기국 변경 후 추적 불가
- TCC20은 모든 CCM들이 이행 평가요소를 충족한 의무들의 목록을 게시하고, CCM들의 불이행 현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례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음
- TCC20은 2025년에 검토될 52개 의무 목록에 다음 2가지 평가요소들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음: ① (CMM 2023-03 2항) 북위 20도 이북 협약수역 내 북방 황새치 어획노력 수준을 보고 및 사무국의 검증 가능성 ② (CMM 2023-03 4항) 2항 보고를 동 CMM 부록1 형식으로 제출

## □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

- SSP는 어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고, TCC20은 기후변화 작업반 공동의장들(마셜, 미국)이 진행 중인 또는 착수가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CCM들의 의견을 향후 작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- TCC20은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수행의 중요성을 논의하였고,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의견이 표명되었음: ① 포괄적인 보존관리조치 평가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 ② 평가의 유용성 ③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 ④ 평가 완료 일정
- TCC20은 공동작업반 의장들이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‘보존관리조치 평가를 위한 위임사항’ 수정버전을 준비하여 21차 총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- TCC20은 총회가 위임사항을 채택한 후 평가를 적용할 우선순위 보존관리조치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음

## □ 과학 기반 관리 지원

- 이행감시제도 하에서 제기된 보존관리조치 해석 이슈
  - 청새치에 대한 ‘목표 조업(fishing for)’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SSP가 선박별 총어획량 중 청새치 어획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
  - IMO 번호를 획득할 수 없는 ‘예외적 상황(extraordinary circumstances)’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2018-06 11항을 삭제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였음
  - 북위 20도 이북 국가관할권 이원에서 선어를 어획하는 선박들의

옵서버 요구사항(2012-03 2항)이 2018-05 부록C와의 관계에서 계속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였음

○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및 FAD 관리옵션 회기간 작업반

- TCC20은 FAD 관리옵션 회기간 작업반을 '25년에 보조기구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였음
- TCC20은 동 회기간 작업반에서 FAD 투척 및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선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
- TCC20은 2023-01 38항 의무\*에 대한 평가요소를 검토할 것을 부의장에게 요청하였음

\* 2024-2026년에 연승 옵서버 커버리지를 증가시킬 경우 눈다랑어 어획한도를 비례적으로 증가

○ 바닷새 보존관리조치(2018-03) 검토

- TCC20은 뉴질랜드가 주도한 회기간 작업반 결과를 검토하였음
- 중국은 바닷새 자원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중서부태평양 해역 내 연승조업에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을 언급하였음
- 일본과 대만은 위도에 따른 저감조치 도입은 위도별 분포하는 종들의 자원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저감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 저감조치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
- TCC20은 11.1까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에 대한 CCM들의 의견을 받고 21차 총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음

○ 상어 지느러미 보존관리조치(2022-04) 내 대안적인 조치\*

\*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(8항)가 면제되는 경우: ①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같은 포대에 보관될 경우 ②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줄 또는 와이어로 연결되어

있을 경우 ③ 검색관이 쉽게 확인가능하도록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태깅되고 로그북에 보관 위치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

- 캐나다는 공해승선검색 중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에 대한 대안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하고 동 면제 삭제를 제안하였음
- 일본은 자국의 항구검색에서는 검증에 어려움이 없었고, 대안적인 조치 삭제는 본 조치를 불이행하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영향이 없고 조치를 이행하는 자들에게만 피해를 끼칠 것이며, 조치 개선을 위한 방법은 논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중국과 대만도 이에 동의함
- EU는 대안적인 조치 허용을 원하는 측이 대안적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나, 지금까지 대안적인 조치 반대 측에서 비효과성에 대한 증거만 제공되었음을 언급
- TCC20은 대안적인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조치를 사용하는 CCM들이 상세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하고, 21차 총회가 금년 만료되는 본 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

○ 고래류 보존관리조치 제안서

- 미국과 한국이 공동제안한 고래류 보호를 위한 보존관리조치 제안서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고, 일부 수정의견들을 반영하여 21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

\* 선망과 연승에서 고래류 포획 금지 및 혼획시 방류, 접촉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출

## □ WCPFC 감시 프로그램

### ○ 지역옵서버 프로그램(2018-05)

- TCC20은 ROP 최소기준 데이터 항목들 내 여러 요소들이 중복된 정보 수집임을 확인하고, ROP 회기간 작업반\*에서 데이터 항목들을 검토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것을 21차 총회에 권고하기로 하였음

\* 21차 TCC에서 대면 회의 개최, 파푸아뉴기니를 작업반 의장으로 선출

### ○ 전자감시(EM) 최소기준 개발

- TCC20은 2023-01 의무 충족을 위해서 21차 총회에서 EM 최소기준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, 작업반에서 제출한 최소기준 텍스트 세부사항들에 대한 의무 여부(must/should)를 논의하였음
- 작업반 의장은 EM 서비스 제공업체들 간 EM 소프트웨어 호환을 위한 표준 개발을 장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### ○ 전재 보존관리조치(2009-06)

- 전재 작업반은 21차 총회에 제출할 제안서에 대해 논의하였음
- 전자적인 전재 보고(TSER) 사용이 장려되나 기존 이메일 보고 방식도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는 의견이 표명되었음(일본, 대만)
- 공해 전재 실시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 주체를 위원회가 아닌 CCM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표명되었음(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)
- 미국, 뉴지, FFA는 공해 전재시 운반선 외에 하역하는 선박에도 옵서버 승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은 불필요함을 주장하였음
- 전재 작업반은 21차 총회까지 이메일 논의를 진행하고 21차 총회에 논의 결과를 제출하기로 하였음

○ 공해승선검색 보존관리조치(2006-08)

- 중국은 공해승선검색 중 검색단에 의해 DNA 조사 및 중량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, 표준 방법론이 현재 없음으로 인해 검색받는 선박 및 기국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
- 일본은 현재 공해승선검색 중 이루어지고 있는 DNA 조사에 관한 정보부터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
- TCC20은 호주와 관심 있는 CCM들이 공해승선검색에 관한 자발적인 지침 및 모범관행\* 개발 작업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\* 포함될 내용: DNA 조사, 중량 추정, 혼획 저감 조치 평가, 증거 수집 및 제출, 다국어 표준 질문지 업데이트

○ 근로표준 작업반

- 중국은 외국인 선원을 공급하는 업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'선원 공급자' 정의 마련과 선원 공급자들의 의무적인 등록 요구를 제안하였고, CCM들은 중국 제안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음
- PNA는 적용범위, 발효시점, 역량구축 등에 대해 총회 때까지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표명하였음

○ 기타

- (의장 선출) 임기가 만료한 현 의장단에 대한 후임 추천이 없어서 21차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
- (차기 회의) '25.9.24(수)~9.30(화) /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